

복지용 특장차량(JDCar) 자원사업

- 도내·외 사회복지시설(단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을 통한 접근권 향상에 기여
- 특장차량 미확보 시설(단체)지원으로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도모

I

추진개요

1. 차량재원

가. 차명 : 창림저상슬로프장애인차(중형승합, 2016년식)

나. 승차정원 : 6명(휠체어이용자 2명 탑승 가능)



2. 지원대상 : 도내·외 사회복지시설(단체), 비영리기관

- 우선 순위 : 우리 협의회 회원시설 → 도내 시설 → 도외 시설

3. 지원용도 : 해당 시설(단체)의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지원

- 영리·종교·정치행사 지원은 불가

4. 지원방법 : 사전예약 신청서 접수 → 지원 적정여부 검토 → 지원여부 확정 → 통보

가. 사전예약 방법 : 차량 이용일 7일전 신청서 제출(추후 온라인 예약시스템 마련)

○ 제출방법 : 팩스(702-3383) 또는 전자우편(jejubokji@hanmail.net)

○ 차량지원 확정시, 차량이용 계약서 작성 제출(운전자격 : 만 21세 이상인 자)

나. 예약변경 및 취소 : 최소 3일전

(이후 변경 및 취소할 경우 연간 사용일수에서 1일 차감)

다. 이용일 한도

1회 최대	1개 시설(단체)당 연간 이용한도		비 고
	우리 협의회 회원시설	그 외 시설	
2박 3일	연간 20일	연간 10일	단, 협의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5. 이용요금 : 무료(단, 주유비는 이용자 부담, 출고시 주유량 원상회복 후 입고 가능)

6. 차량 출 · 입고

구 분	출 고	입 고
일 시	사용일, 09:00	사용 만료일, 18:00
장 소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내 주차장	

※ 주말 및 공휴일 등 협의회 휴무일에는 차량 출·입고 불가

7. 보험가입사항 : 협의회 부담(대인(1,2), 대물, 자상, 무보험차, 자차 가입)

Ⅱ

행 정 사 항

○ 차량대여 관련 문의 : 복지사업팀 고성민 팀장, 황이삭 대리(T.702-3784)

복지용 특장차량(JDCar) 대여 신청서

※접수일시(201 . . . :)

차량대여 신청 시설 · 단체			
시설 · 단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사 용 목 적			
사 용 기 간	201 . . . (:) ~ 201 . . . (:)		
차량 운전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연령)	(세)	면 허 종 별	

귀 회의 복지용 특장차량(JDCar)대여지침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차량대여를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운전자 운전면허증 사본 1부.

201 . . .

신청 시설 · 단체 대표 _____(인)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

※ 운전자는 뒷면의 ‘운전자 주의사항’을 반드시 읽어 보시고 서명하셔야 차량을 인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복지용 특장차량(JDCar)운전자 서약

복지용 특장차량(이하 JDCar) 운전자 본인은 차량을 인도 받기 전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서명함으로써 JDCar가 제주 사회복지 현장의 공동자산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1. JDCar가 제주지역 사회복지계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여 안전운전은 물론 차량 내·외부를 청결하게 관리하겠습니다.(차량 내에서 흡연은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JDCar를 사용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3. JDCar를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장치를 철저히 확인 한 후 차량을 운행하겠습니다.
4. 차량 인도 전 차체 내외부 상태, 연료량 등을 확인 한 후 차량을 인도받겠습니다.
5. 차량 운행 중 수시로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하겠습니다.
6. 신청서 작성시 제시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본인 이외의 자가 운전할 수 없도록 하겠으며, 만약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운전자를 교체해야 할 경우 '제주사회복지협의회'로 연락하여 허가여부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7. 차량 임차기간 중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차량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8. 회원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부과 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등은 차량 반환 후에도 운전자가 납부하겠습니다.
9. 차량 운행 중 차량문제 발생, 사고발생시 즉시 '제주사회복지협의회'로 연락을 취한 후 차량 내 비치된 운전자 조치요령에 따라 조치하며 원만한 처리를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0.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비용의 전액을 배상하겠습니다.
 - 가. 고의로 인한 손해
 - 나.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 다. 영리를 목적으로 차량을 전대하거나 요금 또는 대가를 받고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라. 범죄를 목적으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손해
 - 마. 사고발생 후 제주사회복지협의회에 즉시 통보하지 않아 방치된 손해
 - 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
 - 사. 마약, 각성제,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아. 차량을 경기용이나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사용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 자. 신청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11. 차량 사용 후 입고시 최초 주유량 원상회복, 차량 내 청결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입고 시키겠습니다.